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8. 10. 18.>

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
사업자	상 호(사업장명칭)		
	성 명(대표자)		사업자등록번호(생년월일)
	주 소		(전화번호 :)
개선계획	사업장 소재지		(전화번호 :)
	다중이용 시설현황	업 종	
		시설명	규모(면적) (㎡)
	개선명령 사유		
	개선기간		개선완료 예정일
	개선대책		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, 제9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명세(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 음

처리절차

계획서 작성	접 수	검 토	결 재
제출자	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(환경정책과 또는 환경보전과)	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(환경정책과 또는 환경보전과)	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(환경정책과 또는 환경보전과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